

월북작가 저작권, 어찌할 것인가

특별법 제정문제 등 세미나서 제기돼

최근 월북작가 작품집이 활발하게

출간되면서 월북문인의 저작권에

관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무분별한

중복출판 방지와 유족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월북작가저작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생사확인, 유족관계 증명 어려워

7·19해금조치 이후 월북작가 작품집이 활발하게 출간됨으로써 월북문인의 저작권문제가 당면과제로 대두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9월2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張仁淑)가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학계·법조계·출판계 인사 및 월북문인 유족들이 대거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월북문인의 작품집 출간과 저작권 확정엔 일반적 상식 이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가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저작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중환저작권심의위원(서울신문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 토론, 방청석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월북문인의 문학활동」에 대한 권영민교수(서울대 국문과)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권교수는 월북문인들의 작품세계, 이념과 노선, 월북과정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소개하면서, 해방 당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던 전문적인 문학가는 180명을 넘지 않았고 이중 110명 정도의 인원이 「재북파」·「월북파」·「남북문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때 이들을 무시한 한국문학사의 올바른 서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훈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월북작가 작품의 저작권 귀속과 행사」란 발표를 통해, 월북작가의 경우 그 저작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저작권

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또한 현재 그 생사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작권의 귀속자를 쉽게 확정지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우리 저작권법에 이에 관한 아무런 특별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저작권의 귀속과 행사는 결국 일반 민법의 이론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고려해야

① 저작자가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경우, 그만이 저작권자이다. 가족들은 저작자의 월북 이전에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은 이상 무권리자일 수밖에 없다. ② 만일 월북한 작가가 사망했다면 남한에 있는 가족은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87년 7월1일 현재 사망후 30년이 경과했다면 그 저작권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상속도 되지 않는다. ③ 월북작가가 생사불명인 경우, 실종선고나 부재선고의 제도를 이용하여 월북작가의 사망을 擬制함으로써 상속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는 사망간주일로부터 향후 50년간 상속인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상속에 의하지 않더라도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를 활용하여 월북작가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할 수도 있다. ④ 사망을 입증하거나 실종선고 부재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남한의 가족이라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호사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현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남한의 가족이 월북작가의 저작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월북작가 저작물의 발행·배포 등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저작자나 그 상속인이 입은 손해의 전보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국가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윤희창(문공부 저작권과장), 박원순(변호사), 김병익(문학학과지성사 대표), 김명렬씨(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병익씨는 월북작가의 저작권문제는 많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월북문인저작권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상속자의 신원확인, 작품출간에 관한 권리보호와 함께 인쇄·수입 등을 관리해서 남한에 적절한 상속자가 없다면 이북에 송금한다든가 하는 방

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중환위원의 설명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할 수 있는 문제”인 월북작가 저작권문제가 얼마나 미묘하고 곤혹스러운 것인지 점검해봄과 아

울러 앞으로 이 문제는 그동안 유족들이 겪어 온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충분히 고려한 방향으로 풀려나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의 확인으로 끝났다.

—남진우기자

遺族의 의견

“저작권 외면한 불법출판 규제해야”

金明烈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李泰俊씨 생질



월북문인들이 월북 이전에 발표했던 작품들을 정부가 지난 7월에 해금한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여러 모로 기쁜 일이었다. 그것은, 특히 수십년을 고통과 수모 속에 지내 온 그들의 유족에게는 떨리는 감격을 가져다 준 낭보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뿐이었고, 유족들은 지금 해금 후에 드러나는 여러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들로 인해 전과는 다른 면에서 슬픔을 맛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첫째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문제이다. 대개의 월북문인 직계가족들은 유산을 상속하거나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등의 필요에 의해 월북문인들을 이미 과거에 실종자로 신고했다. 그런데 현 저작권법에 의하면 실종자의 저작권은 실종신고한지 3년 후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령 1960년 실종신고를 한 경우는 앞으로 25년간만 유효한 셈이다.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으로 연장된 것이 87년 7월 1일이고 그 이전에는 사후 30년이었으니까, 40년대 후반에 월북하여 50년대 초반에 실종신고를 한 경우는 작년 7월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유족은 저작권을 한번 행사해보지도 못하고 잃게 되어 있다. 유족들의 명든 가슴을 한번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이같이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성인 것이다.

어떤 권리의 보호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기산해야 함이 상식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해석은 권리가 사실상 없었던 때를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행사 못하게 한 권리 아닌 권리를 법은 내내 권리로 보호해왔다는 앞뒤가 안맞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해금일자에서부터 기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유족 모두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순리인 것이다.

둘째는 무연고자들이 월북문인의 작품을 출판·판매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월북문인의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특히 심하다. 직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되어 저작권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런 정식 절차를 밟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마련이다. 그 사이를 틈타서 약삭빠른 출판인들이 책을 마구 찍어 파는 것이다. 이런 것이 끼치는 해악은 여러가지이나 한 가지만 들면, 이렇게 졸속히 나온 책들은 대개 분문확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이는 월북문인의 작품을 독자에게 바르게 읽혀서 정당한 평가를 내리게 한다는 해금의 본뜻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해악을 막기 위해서는 주무당국이 우선 불법출판을 막을 보다 효율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 유족이 방계만 있는 경우에도 권리의 침해가 일어날 수 없도록 관계 법령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